



법인설립...소득 평준화

사례

Y씨는 캐나다에 거주한 이후로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에 전념해 왔습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은 단순한 중개 역할이 아닌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고, 투자 분석과 발로 뛰는 영업을 통해 일한 만큼 성과를 받을 수 있으며 정년이 없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점 등 다양한 장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과거 10여 년간 부동산 시장을 꾸준히 연구하고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 왔는데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따라 Y씨도 소득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즉, 특정 연도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연도는 거래가 적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등 연도별로 소득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Y씨가 내는 세금도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면서 Y씨는 소득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세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사에게 연도별 소득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절세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높은 세율에 과세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세율 체계상 소득이 높아질수록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인 한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BC주의 경우 소득이 적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낮은 세율은 20.06%로 \$10,000의 추가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2,006에 불과하지만,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은 47.7%로 \$10,000의 추가 소득에 대해 \$4,77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도별로 소득 편차가 심한 납세자는 매년 비슷한 소득수준의 경우에 비해 전체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BC주 거주자가 2015년 \$150,000, 2016년 \$50,000의 소득을 얻은 경우 내야 할 세금은 각각 \$45,000과 \$8,000가량으로 총 \$53,000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동일하게 \$100,000의 소득을 얻은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매년 \$23,000가량으로 총 \$46,000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소득 편차가 심한 전자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7,000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연도별 소득수준의 변동이 심한 납세자는 연간 소득수준을 평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 중 대표적인 것은 개인주주의 연도별 소득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BC주의 경우 임대업이나 투자소득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500,000까지의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1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특정한 한 해의 소득이 높더라도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고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낸 후 법인 내에 소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 내에 유보된 소득은 최종적으로 개인 주주에게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데 이때 개인 주주의 한계세율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전체적인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외에 가족들과 같이 주식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에는 전체소득을 가족들과 분산해서 추가로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Y씨의 과거 세금신고 내용을 살펴보니 과거 3개 연도에 각각 \$180,000, \$50,000 및

\$40,000의 소득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총 \$73,000가량의 세금을 냈습니다. 만약 법인을 이용하여 Y씨가 본인의 연간 소득을 \$90,000으로 평준화시켰다면 과거 3년간 \$62,000가량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총 \$11,000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 및 결론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Y씨는 본인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로 개인 부동산 중개사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자유로웠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 자문이 필요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이때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는 Y씨에게만 발행하고 Y씨의 가족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해서 가족 간의 소득분배 목적에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사로부터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일반 개인 사업자일 때와 다른 세법 규정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체 형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연도별로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법인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을 활용해서 연도별 '소득 평준화'를 통한 절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